

1. 제정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가 신설(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월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에서 위임한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5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인프라, 금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7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 제3호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라. 신청 결과의 통지(안 제8조)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2. 17.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명칭) 제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딜 인프라”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2. “뉴딜 인프라 심의제”란 뉴딜 인프라 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3. “심의 대상사업”이란 뉴딜 인프라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 관한 사업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위한 대상을 말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를 둔다.

1.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2. 뉴딜 인프라 심의 기준 수립
3. 뉴딜 인프라 심의제 관련 정책의 제안
4. 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에 대한 자문
5. 기타 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의 대상사업의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에게 뉴딜 인프라 심의를 위한 사전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 안전으로 부쳐진 뉴딜 인프라 인정 대상 소관 행정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인프라, 금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신청결과의 통지)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뉴딜 인프라 심의를 신청한 신청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